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. 2. 23 선고 2022가단5063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12. 22.

판 결 선 고 2023. 2. 23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‘목록 1’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3 지분에 관하여 2021. 5. 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D에게 별지 ‘목록 1’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2021. 8. 30. 접수 제3291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가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‘목록 2’의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3 지분에 관하여 2021. 5. 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6,366,9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6,366,9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가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‘목록 2’의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2021. 5. 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325,4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325,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4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5. 소송비용 중 1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‘목록 1’ 및 ‘목록 2’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3 지분에 관하여 2021. 5. 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¹⁾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6,860,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및 주문 제1의 나.항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3. 일부 기각 부분

가. 별지 ‘목록 2’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청구

원고는 별지 ‘목록 2’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1. 5. 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,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,860,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.

나. 별지 ‘목록 2’의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

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모두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와 D 사이에 2021. 5. 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 이전에 별지 '목록 2'의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조합의 채권최고액 3,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말소된 사실, 위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/13 지분의 시가 합계는 11,150,600원{(위 제1항 기재 부동산 시가 23,583,900원 + 위 제2항 기재 부동산 시가 23,495,000원 + 위 제3항 기재 부동산 시가 25,400,000원)2) × 2/13}이고, 위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31,093,649원으로 D의 상속분인 2/13에 상응하는 피담보채무액은 4,783,638원(31,093,649원 × 2/13, 계산 편의상 원단위 미만은 버림, 이하 같음)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위 각 부동산 중 D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6,366,962원(11,150,600원 - 4,783,638원)이 사해행위 취소 범위의 한도가 된다.

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별지 '목록 2'의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은 6,366,9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6,366,9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, 이를 초과하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다. 별지 '목록 2'의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

위 가.항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가 D과 사이에 별지 '목록 2'의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선의의 전득자인 신안군에게 기부채납한 사실, 위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2/13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은 325,415원(2,115,200원3) × 2/13)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위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에 해당하는 325,415원이 사해행위 취소 범위의 한도가 된다.

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별지 '목록 2'의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은 325,4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는 피고는 원고에게 325,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

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, 이를 초과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이지혜

별지

- 1) 피고와 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실제로는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더라도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로 기재된 법률행위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대로 등기부 기재에 따른다.
- 2)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.
- 3)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.